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行政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1. 경 과

의안 제286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고자 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소식지 제작 참여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복소식, 어린이,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되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의 증원 (안 제7조제2항): 8인 이내 → 15명 이내
- 나. 위촉직 위원 자격에 편집 및 사진분야 전문가를 추가 신설함 (안 제7조제3항제3호)
- 다. 편집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안 제7조제4항)
- 라.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9조)

마. 소식지 제작 참여에 따른 보상규정 신설 (안 제1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소식지 제작 참여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7조제2항에서 행복소식, 어린이,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되던 편집위원회를 통합하고자 위원회 위원 정원을 "8인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 하였으며,
-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위촉직 위원 자격에 편집 및 사진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제7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 조의 제목을 "간사 등"에서 "편집위원회의 운영 등" 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공보담당주사"에서 "홍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 안 제9조제3항에서 영등포행복소식 외 기타 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 안 제9조제4항에서 위촉직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 추가 하는 등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명예기자 위촉대상을 "구민 또는 공무원"에서 "구민, 영등포구 소재 직장인,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 조의 제목을 "위원수당 등"에서 "실비보상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 지 제작에 참여한 경우 실비 보상 및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보완하였으며.
- 안 제12조제2항에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음.
- 그 밖에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

제2항, 안 제7조제4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1조제3항, 안 제11조 제4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 용례를 두어 시행시기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였음.
- 검토결과, 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실비보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行政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計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7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투표의 청구를 위한 서명부 등에 주민 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투표 청구에 있어 필요한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규정의 정비(안 제8조 ~ 제10조)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O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안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안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의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 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6조, 안 제12조부터 제13조, 안 제15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주 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법 률의 위반소지를 없애고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 료됨.

참 고 자 료

1 개인정보 보호법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7.26.>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

[본조신설 2013.8.6.]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 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제7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行政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9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나. 구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의 축소 (안 제5조)
-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조항 삭제(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기금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임.
- 또한, 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2항 규정을 반영하여, 안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제3항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의 주요항목 변경이 가능한 지출금액의 범위를 1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2이하로 축소하였으며.
-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6조제4항 규정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과 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확 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것 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